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010

발의연월일: 2020. 11. 5.

발 의 자: 박찬대・유동수・조응천

김수흥 · 서삼석 · 이성만

문정복 · 허종식 · 김영배

윤관석·조승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,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,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할 예정임(2020. 3. 24. 제정, 2021. 3. 25 시행).

그러나 현행법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주관하고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,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도 미비한 상황임.

또한 학교복합시설로 설치 가능한 용도가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에 따른 학교시설로 한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 하고 있어, 공공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교 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학교복합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교육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, 학교복합시설 설치 등의 주 체를 명확히 함으로서 학교 현장의 부담이 완화되고 학교복합시설의 설 치가 활성화되는 한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학교복합시설을 「학교시설사업촉진법」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공·문화체육시설, 주차장, 평생교육시설 등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 제4항 신설).
- 다.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동의하거나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,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주체가 원칙적으로 건축을 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하되,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5조).
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082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학교"란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- 2. "학교복합시설"이란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.
 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·문화체육시설
 - 나.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
 - 다.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
 - 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각 호외의 부분) 중 "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의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과"를 "지방자치단체의 장은"으로, "사항을 협의하여"를 "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"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(이하 "감독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이 학교복합 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
- 2.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,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,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- ④ 학교복합시설은 제3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건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증·개축,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, 재정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에 따른다.
- 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교육경비 보조의 특례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6항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에도 불구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(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)에게 직접 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

법률 제17082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・관리에 관한 법률 | 설치 및 운영・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 "학교복합시설"이란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2 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로서 1. "학교"란 「초・중등교육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하기 위하여 설치 · 운영하는 문화 및 복지 시설, 생활체육시 설,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한다.

개 정 아

법률 제17082호 학교복합시설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- 2. "학교복합시설"이란 「학교 시설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1 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 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 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 다만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시 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.
 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라 목에 따른 공공・문화체육 시설
 - 나.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차장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) ① ~ ③ (생 략) <신 설>

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<u>의 「초·중등교육</u> 법」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 다.

- 1. 학교복합시설의 규모, 용도, 1.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재원,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 한 사항
- 2.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 영 주체에 관한 사항
- 3.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및 지 지하는 데 동의한 경우

다.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1 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 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

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・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하다.

제5조(학교복합시설의 설치) 학교 제5조(학교복합시설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-----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
> 학교의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 (이하 "감독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이 학교복합시설을 설

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

 4.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

 리 방법에 관한 사항

 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2.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 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 회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학교 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학교복합시설의 기획,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,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④ 학교복합시설은 제3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건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증·개축,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,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

리 정할 수 있다. 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 <신 설> 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「학 교시설사업 촉진법」에 따른다. <신 설> 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 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 설> 제8조(교육경비 보조의 특례)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6항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에도 불구 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 관의 장(교육부장관은 제외한 다)에게 직접 보조할 수 있다.